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5가합1077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원고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다예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김경수
변론종결	2025. 10. 17.
판결선고	2025. 11. 28.

주 문

1. 피고가 2007. 3.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정관 제27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관한 부분 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각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다공증치료제 및 기타 골질환 관련 신약의 개발,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8.

12. 8.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각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들이다.

다. 피고는 2007. 1. 17.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상장 당시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인 B(24.7%) 외 4인이 피고 발행주식의 28.51%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2007. 3. 27. 개최된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안정의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방법에 관한 피고의 정관 제27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이하 변경 후 피고 정관 제27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정관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정관 조항 변경에 관한 결의를 ‘이 사건 변경 결의’라 한다).

변경 후 정관	변경의 목적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이사 중 동시에 2명 이상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주주제안권으로 인하여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이사의 선임 및 기존 이사의 해임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경영권 안정
⑤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정관 조항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경 결의는 상법 제368조 제1항 및 제434조,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주주제안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상법상 정관으로 특별결의 정족수를 가증시키는 사적자치가 허용되고, 상당수의 주식회사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사건 정관 조항은 일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특정 주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평 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의 안전에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권리이지 주주제안에 의한 안전의 가결이나

의결정족수까지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관 조항은 주주제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정관은 주식회사의 자치규범으로서 회사의 특성이나 경제적 사정 등 외부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정관 조항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적자치란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 변경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정관 조항의 내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내지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회사의 본질 등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해당 정관 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관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내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공익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결의는 정관 변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가장 중요한 주주의 권리인 의결권(상법 제369조 제1항)을 비롯하여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4조),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등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내지 주주평등의 원칙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르면 주주제안에 의한 이사 선임 및 해임 안전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될 수 있는 반면, 피고 이사회의 제안에 의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1/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이사 선임 안전이 가결되고,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이사 해임 안전이 가결된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지배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4 이

상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1/2 이상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만 충족하면 원하는 대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반면 그 외 일반 주주들은 발행주식총수의 4/5 이상을 충족하여만 자신들이 제안한 이사가 선임되게 하거나 기존 이사 해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차등적 취급이 존재하게 된다.

3) 상법에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제안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점, 이 사건 정관 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등적 취급의 정도가 매우 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관 조항으로 인하여 일반 주주들의 주주제안의 방식에 의한 이사 선임과 이사 해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구나 충분히 위와 같은 차등적 취급을 수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내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관 조항으로 인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 내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주주제안권이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과 같은 경영권 위협에 이용되는 실태를 고려하면 주주제안 안건 중 이사의 선임과 해임 안건에 대해서 결의정족수를 상향한 피고 주주들의 의사에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사 선임과 해임에 관한 모든 주주제안이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주주제안권은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여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일반 주주의 건전한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

다) 피고 정관 제27조 제4항은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이사의 선임 및 기존 이사의 해임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 선임과 해임에 관한 주주제안이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이용되는 경우라면 피고 정관 제27조 제4항을 통하여 경영권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원고들도 피고 정관 제27조 제4항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위 조항 변경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라) 피고가 신약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해임에 관한 모든 주주제안을 회사나 회사의 지배주주가 이사를 선임·해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차등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화된다고 볼 수 없다.

5) 주주는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익권과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권을 가지고 있고, 공익권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등과 같이 경영의 참여를 위한 권리와 대표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 및 감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과 같이 경영의 감시를 위한 권리가 있다. 이러한 상법상 주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강행법규로서 주주 전원의 일치로도 이를 박탈할 수 없다.

6) 피고는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회사로 공개된 회사이고, 그 주주의 구성상 소수 주주에 해당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이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관 조항으로 인하여 일반 주주들의 주주제안의 방식에 의한 이사 선임과 이사 해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제안의 방식에 의한 이사 선임과 이사 해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주주제안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되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주의 공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7) 대표소송, 이사의 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현재적, 사후적 경영 감시를 위한 공익권이고,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권은 주주의 경영 참여를 위한 공익권인바, 대표소송 등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정관 조항에 의한 공익권의 과도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8) 이미 적지 않은 상장회사가 정관에 이른바 초다수결의제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초다수결의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가중정족수 등이 다르고 정관 변경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관 조항으로 인한 비지배주주에 대한 차등 취급 및 공익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리니 이형철

각주1: 원고들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피고가 2007. 3.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정관 제27조 제3항 및 제5항 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란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27조 제3항과 같은 조 제5항 중 위 제3항 조항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4/5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관한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이므로, 주문과 같이 본다.